

2023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 정 기 회 의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B118호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당신의 꿈에 날개를, <드림>

2023 하반기 공과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자료집

목 차

▶ 통과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 진행 순서 통과

▶ 보고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보고

▶ 인준 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도입의 건
2.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1.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2. 2023년 2기(2023.06.15.~2023.11.30.)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결산(안)

▶ 부록

1. 2023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2. 2023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3.07.12.)

I . 통과 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진행 순서 통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략)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위	인원수
학생회장단	2명
공과대학 학생회장	나세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박선호
건축학과	5명
건축학전공 회장	정지은
건축학전공 대표	박성호
건축공학전공 대표	이용걸
2학년 대표	김은초
1학년 대표	박준서
건설환경공학부	5명
학생회장	권윤경
부학생회장	류수진
부학생회장	유승현
2학년 대표	지영석
1학년 대표	박민준
광역반	3명
학생회장	유지호
부학생회장	정승현
1학년 대표	윤정필
기계공학부	8명
학생회장	김대한
부학생회장	민윤정
2학년 A반 대표	박지민
2학년 B반 대표	신정하
2학년 C반 대표	이유창
1학년 A반 대표	이한결
1학년 B반 대표	노강민
1학년 C반 대표	이제현

산업공학과	7명
학생회장	이송이
부학생회장	조건희
부학생회장	안현민
4학년 대표	이병주
3학년 대표	오수빈
2학년 대표	박석우
1학년 대표	이현수
에너지자원공학과	4명
학생회장	전영진
부학생회장	신원재
2학년 대표	박세준
1학년 대표	박주언
원자핵공학과	6명
학생회장	신의식
부학생회장	손동현
4학년 대표	이진원
3학년 대표	김동민
2학년 대표	박경수
1학년 대표	김동하
재료공학부	4명
학생회장	김경오
부학생회장	김의현
2학년 대표	신지호
1학년 대표	우찬우
/	

전기정보공학부	16명
학생회장	서지훈
부학생회장	송현석
4학년 R반 대표	정순호
4학년 롤루반 대표	장원재
4학년 랄라반 대표	정예원
3학년 R반 대표	이송은
3학년 롤루반 대표	박수완
3학년 랄라반 대표	송예은
3학년 C반 대표	정서본
2학년 R반 대표	소지원
2학년 롤루반 대표	김나림
2학년 랄라반 대표	이준오
2학년 C반 대표	김승현
1학년 R반 대표	유현준
1학년 랄라반 대표	김석환
1학년 C반 대표	송기원
조선해양공학과	5명
학생회장	구준영
4학년 대표	김대상
3학년 대표	임재하
2학년 대표	노혜빈
1학년 대표	장세빈

컴퓨터공학부	6명
학생회장	문동휘
부학생회장	한관엽
4학년 대표	유재훈
3학년 대표	조예나
2학년 대표	김민재
1학년 대표	박하준
항공우주공학과	6명
학생회장	이태호
부학생회장	이동규
4학년 대표	박태성
3학년 대표	이주언
2학년 대표	정유민
1학년 대표	한진우
화학생물공학부	7명
학생회장	한정우
부학생회장	유은서
2학년 A반	김관우
2학년 B반	박정환
2학년 C반	지수민
1학년 Acid반	임제휘
1학년 Base반	김형진
계	84명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1조 (시행세칙)

-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제3장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회기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 ① 공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의 원칙 : 공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번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한 다른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조 (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개의’를 제한한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11. “발언권(發言權)”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의결권(議決權)”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제5조 (발언)

-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공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이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④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계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 ④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공고한다.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공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인준 안건
6. 논의 및 의결안건
7. 심의 안건 (예·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제8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활용한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 ①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는 공학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전까지,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공학대회로 이월한다.
-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계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

결한다.

-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 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2조 (표결)

- ①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대의원은 거수 혹은 구두로 표결한다. 단, 의장이 이의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어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결을 박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인준 안건, 심의 안건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 ③ 찬성, 반대, 기권에 표결한 각 대의원 명단을 각 집계 때마다 속기한다. 대의원은 표결내용과 함께 단위명을 말하여야 하고 의장은 속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으로 표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예·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 ①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공학대회는 표결로써 예·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③ 의장은 심의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하에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고 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보고

▶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도입의 건
2.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1.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2. 2023년 2기(2023.06.15.~2023.11.30.)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결산(안)

▶ 보고 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보고

▶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도입의 건
2.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1.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2. 2023년 2기(2023.06.15.~2023.11.30.)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결산(안)

Ⅱ. 보고 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보고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표 1-1> 학생회장단 구성

직위	성명	소속	학번
학생회장	나세민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1
부학생회장	박선호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표 1-2> 2기¹⁾ 집행위원장 및 팀장단 구성

직위	성명	소속	학번
집행위원장	조예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1
D팀 팀장	김재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0
D팀 부팀장	이정웅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2
R팀 팀장	지영석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2
E팀 팀장	박찬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E팀 부팀장	김도근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A팀 팀장	김대현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2
A팀 부팀장	김의현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M팀 팀장	박수완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1

<표 1-3> 집행위원회 2기 구성

소속 팀	성명	소속	학번
D팀	김은수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3
D팀	양문용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육지훈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윤태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2
D팀	조성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3
R팀	김나연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R팀	류한나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1
R팀	손예훈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1
R팀	이송이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1

1) 2기: 2023.04.01.~2023.07.31. 활동

R팀	채정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0
R팀	허정민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E팀	김규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E팀	김준영	공과대학 광역반	23
E팀	김지이	공과대학 광역반	23
E팀	이민창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3
E팀	이수민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E팀	정승현	공과대학 광역반	23
E팀	정재경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A팀	우태헌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A팀	이석현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
A팀	이현택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A팀	차찬미	공과대학 광역반	23
A팀	카이롤라 셍티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M팀	김경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1
M팀	서휘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M팀	유지호	공과대학 광역반	23
M팀	이민호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3
M팀	정진혁	공과대학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인재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2
디자이너	김재우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김태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1
디자이너	김형준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3
디자이너	정진용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1

<표 1-4> 3기²⁾ 집행위원장 및 팀장단 구성

직위	성명	소속	학번
집행위원장	조예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1
D팀 팀장	김재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0
R팀 팀장	지영석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2
R팀 부팀장	이송이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1
E팀 팀장	박찬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E팀 부팀장	김도근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A팀 팀장	정지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21
M팀 팀장	한정우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2
M팀 부팀장	차찬미	공과대학 광역반	23

<표 1-5> 집행위원회 3기 구성

소속 팀	성명	소속	학번
D팀	서휘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D팀	양문용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우정수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육지훈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D팀	이민창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3
D팀	정준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전공 (공과대학 학생회원권 소지자)	22
D팀	정진혁	공과대학 광역반	23
R팀	김나연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R팀	류한나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1
R팀	손예훈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1
R팀	채정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0
R팀	허정민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E팀	강헌재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E팀	김강현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E팀	김규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E팀	김준영	공과대학 광역반	23
E팀	김지이	공과대학 광역반	23
E팀	이수민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2) 3기: 2023.08.01.~2023.11.30. 활동 예정

E팀	정승현	공과대학 광역반	23
E팀	정재경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A팀	강채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A팀	김경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1
A팀	김도윤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A팀	이규섭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A팀	이현택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A팀	카이롤라 셉티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M팀	김의현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M팀	민신성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2
M팀	유지호	공과대학 광역반	23
M팀	인소윤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3
M팀	전재욱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3
M팀	정민혁	공과대학 광역반	23
디자이너	김서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디자이너	김재우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디자이너	심병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1
디자이너	정진용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1

1. 중점사업

[1]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진행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4박 5일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원 평창군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토와 스태프는 7월 한 달간 사전 준비 업무를 수행한 후, 봉사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멘토링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안건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 공과대학 가을 축제 <Fall in 공: 가을 나들이> 진행

2023 공과대학 가을 축제 <Fall in 공: 가을 나들이>가 9/20(수) 하루 동안 붉은 광장 일대 및 버들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저녁까지는 ‘가을’이라는 테마에 맞춰 꾸며진 부스 및 푸드트럭을 붉은 광장에서 운영하였고, 저녁 이후에는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동아리 및 초청 게스트(오마이걸)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불행히 행사 당일 많은 비가 내렸으나, 부스 운영의 경우 천막 아래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공연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매해둔 우비 2,000여 개를 준비하여 찾아주신 관객분께 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행사의 준비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두잇 및 밝은눈안과의 후원을 받아 준비하였습니다.

[3] 공과대학 내 식당 문제 개선 (진행 중)

공과대학 내 식사 공간 및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학내 식사 공간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에 실시하였던 윗공대 식당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300동~302동 식당의 개선점에 대해 면담,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내용을 학우분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성과 중 하나로 현재 301동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1층 공간은 사용 인구에 비해 협소하다는 문제에 기반하여 비교적 자리가 많은 지하 1층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첨단융합학부 신설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학생처장님과의 면담에서 아랫공대의 식사 공간이 현재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어필하여 첨단융합학부 개설 시에 해당 부근의 공간(약대-아랫공대-첨단융합학부)에 식사 공간을 개설해주시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공과대학 내 식당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의제인 만큼, 앞으로도 해당 의제를 꾸준히 다뤄 학우분들의 식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학생회장단 활동 (중점사업 外)

[4] 첨단융합학부 신설 대비 설립추진단과의 소통 진행

지난 4월 28일 처음 발표하였던 추후 대응 계획처럼, 첨단융합학부의 신설을 대비하여 설립추진단과의 소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설립추진단의 일원이신 학생처장님과의 일곱 차례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각 간담회에서 학부가 설립될 때 공과대학 학우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프라, 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설립추진단에 전달된 공과대학 차원의 우려(인프라 공유 문제, 유사한 커리큘럼, 기초 교양 강좌 수 부족 문제 등)는 각각의 해결책 및 답변을 전달받았으며 특히 커리큘럼의 경우 학내 공청회, 설립준비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도록 소통하였습니다. 이처럼 결정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설립준비단으로 이관되어 현재 첨단융합학부 설립은 실무적인 부분을 남겨두고 있으나, 앞으로도 공과대학 학생회는 학부의 실제 설립 과정 및 초반 운영에 있어 공과대학 학우들의 학습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교양 실험 교과목 개선 협의체> 활동 참여 (진행 중)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험 과목 글쓰기 강의 개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실험 과목에 대해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연석회의와 협의하여 교양 실험 교과목을 개선하는 협의체를 구성, 각 학생회의 학생회장단·의장단이 주도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6월 21일에는 자연과학대학 학장·부학장님과 각 실험 과목 교수님들과의 대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실험 과목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리실험·화학실험·생물학실험 조교실 및 담당 교직원 등과의 면담을 진행, 협의체가 꼽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학우분들께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이러한 개선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6] 공과대학 신양학술정보관 개선

집행위원회 1기에서 진행하였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우분들이 공과대학 신양학술정보관을 이용하며 불편함을 경험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터디룸 보드마카 보충, 열람실 칸막이 제거, 냉·난방 운영 기준 변경(날짜 → 온도), 학기 중(3-6월, 9-12월) 열람실 24시간 운영, 인쇄소 재운영 등의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7] <월간 문화 4월: 공감(工感) 봄나들이> 진행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의 공약인 <월간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4월의 월간 문화 행사는 감성 넘치는 봄나들이 컨셉으로 버들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봄 풍경을 즐기는 학우분들을 위해 돛자리 무료 대여, SNS 태그 시 솜사탕 지급 및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8] 자취생활 보조 및 생활용품 공동구매 진행

실전경영학회 ENACTUS 소속 '가치가'와 함께 생활용품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자취하는 공과대학 학우분들로 하여금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구매한 용품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가치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보조 서비스 또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9] 외부 업체와의 제휴

'시원스쿨 LAB'과의 제휴를 통해 공과대학 학우분들에게 온라인 영어 강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10] 서울대학교 이공계 우수인재 Career Fair 주최

학우분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멘토링 및 기업 커넥팅 전문 기업인 SENLab과 함께 '2023 서울대학교 이공계 우수 인재 Career Fair'을 9월 11일~13일 3일간 주최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학우분들께 이공계 진로에 특화된 채용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R&D 채용 박람회며 40여 개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11] 공과대학 내 그룹스터디룸 이용 안내

2023 하반기부터 모든 스터디룸의 신청이 서울대학교 공간 예약 시스템인 '예약하사'로 이관되었고, 최근 완공된 43-2동(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및 공과대학 강의동 2)의 공간 또한 해당 시스템에 추가되었습니다. 학우분들의 원활한 학습 및 그룹스터디룸 사용을 위해 변경된 스터디룸 예약 방식과 추가된 공간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공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12] 이공계 R&D 예산 삭감 대응 (진행 중)

지난 8월 정부에서 처음 발표하였던 '이공계 R&D 예산 삭감'에 대하여 대응해왔습니다. 예산 삭감 발표 직후 이루어진 KAIST 학생회 발의의 성명문에 연대 단위로서 참여하였으며, 이후 여러 번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우분들의 본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차원에서 각 학부/과 학부장, 학과장 교수님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특별위원회인 '정부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립 위원으로 위촉되어 특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3] 공과대학 학생회 홈페이지 제작 (진행 중)

현재 공과대학 임시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는 공과대학 Notion에 수록된 정보들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주실 예약 등의 기록을 포함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3. 집행위원회 2기 활동 (중점사업 외)

[14] [D팀] <월간 진로 5월: 멘토링 데이> 진행

공과대학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직종 및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그룹별 소규모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월간 진로 5월>의 경우 '멘토링 데이'라는 부제로 많은 학우분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준비되었습니다. 약 100명의 학우분들께서 행사에 참여해주셨으며, 취업·창업·연구직·기술경영·변호사·변리사 분야의 열 분의 멘토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15] [D팀] 카카오톡 채널 운영

집행위원회 1기 때 활성화하였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 학생회에서 집행하는 사업 내용의 공유,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한 소소한 채널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6] [D팀] <병역 백서> 배포

공과대학 학우분들에게 빠질 수 없는 진로 고민인 병역 이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 백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병역 백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및 각 학부/과/반 공지방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17] [R팀] 배리어 프리 시설조사 진행

※ R팀의 <창업 백서> 사업은 3기로 이관되어 이어서 진행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학우분들을 위하여 공과대학 내의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배리어 프리 시설조사를 진행하여 공과대학 내 배리어 프리하지 않은 시설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배리어 프리 관련 이외의 사업은 3기에서 이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 [R팀] 집행위원회 2기 MT 진행

집행위원회의 단결을 위하여 7월 1일~2일 1박 2일간 대부도에서 집행위원회 2기 MT를 진행하였습니다.

[19] [E팀] <월간 진로 4월: 교수님의 멘토링으로 미래를 열어라!> 진행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학우분들께서 관심 있는 직종 및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 매월 그룹별 소규모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진로 4월>은 '교수님의 멘토링으로 미래를 열어라!'라는 부제로 진행되었으며,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님, 전기정보공학부 정덕균 교수님, 재료공학부 이명규 교수님을 연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단순 강연과 달리 교수님, 소속 대학원생분들과의 자유롭고 생생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우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20] **[E팀]** <모기 잡아드림> 사업 진행

윗공대의 모기 및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윗공대 40여 곳에 모기 퇴치 용품(에프킬라, 모기 기피제)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과대학 시설지원실과 협의하여 대형강의실 및 수면실에 무소음 포충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및 내년의 방역 시행 횟수를 대폭 증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1] **[A팀]** <월간 진로 6월: 대기업 종사 연사님과의 소통 기회> 진행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6월 맞이 그룹 소규모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월간 진로 6월>은 '대기업 종사 연사님과의 소통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업 진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글 코리아, 삼성전자 DS부문의 현직자를 연사로 모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2] **[A팀]** <월간 진로 7월: 유학세미나> 진행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7월 맞이 세미나 형식의 진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월간 진로 7월>은 '유학세미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유학을 염두하고 있거나 실제로 준비 중인 학우분들에게 도움 드리고자 기획하였으며, 실제 유학에 합격하신 연사님을 초청해 유학 준비 과정 및 기초 정보 등 유학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학우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3] **[M팀]** <공과대학 체육대회: GONG GUYS> 진행

5월 14일 하루 간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공과대학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및 미니게임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과대학 내 학부/과가 섞인 팀으로 진행된 만큼 공과대학 내의 단합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4] **[M팀]** 복학생에게 알려드림 2 배포

1학기에 이어, 2학기 개강 기간을 맞이하여 복학하는 학우분들을 위하여 지난 학기 동안의 학내 주요 이슈나 변화 사항들을 정리하여 카드뉴스로 배포하였습니다.

4. 집행위원회 3기 활동 (중점사업 외)

[25] [D팀] 공과대학 내 휴게실 개선 (진행 중)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반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인 301동 수면실과 36동 4층 여학생 휴게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필요한 물품 및 개선사항을 조사 중입니다.

[26] [R팀] <창업 백서> 배포 (진행 중)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준비가 막막한 학우분들을 위해 창업 백서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팀 내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공학컨설팅센터의 자문 수합, 창업자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완성된 백서는 이른 시일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창업 백서에 실릴 창업자 인터뷰는 백서의 미리보기로써 세 차례에 걸쳐 카드뉴스로 배포하였습니다.

[27] [E팀] <월간 진로 9월: 선배님들의 창업 이야기> 진행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9월 맞이 그룹 소규모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월간 진로 9월>은 '선배님들의 창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창업을 경험한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학우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김박사넷, AI 분야의 Dalpha를 창업하신 분을 연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8] [A팀] 2023 공과대학 전공로드맵 배포 (진행 중)

매년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배포하였던 공과대학 각 학부/과의 전공로드맵을 2023년의 정보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학부/과의 행정실 직원 및 교수님들께 수정 내용 확인 및 검토를 요청하며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 [A팀] <월간 진로 10월: 변리사 강연(가제)> 진행 (진행 중)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11월 맞이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월간 진로의 경우 공과대학 내에서 수요가 다수 있는 변리사 관련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연사 섭외는 완료되었고 행사의 세부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 [M팀] 계절학기 공학수학 개선 및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개설 (진행 중)

공과대학 내에서 수요가 다수 존재하였던 계절학기 공학수학의 수강반 제한 해제와 계절학기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수업 개설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계절 공학수학에 대한 수요가 다수 있는 점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고, 설문에서 수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곧 다가올 학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섭할 예정입니다.

[31] **[M팀]** <월간 문화 10월> 진행 (진행 중)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의 공약이었던 <월간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맞이 소소한 문화 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컨셉과 행사 일정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보고

1. 개요

<찾아가는 공학봉사단>은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하계 방학 기간에 봉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교류하는 재능 기부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특별기구입니다. 매년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개설해왔으며 올해로 7년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은 제27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6/6)의 의결로 그 설치가 인준되었으며 약 두 달간의 활동을 수행, 제35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8/10)의 의결로 해산되었습니다.

2. 구성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은 아래 명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연번	성명	소속	학번	직책
01	나세민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1	단장
02	조예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1	부단장
03	김경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멘토
04	김준형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3	멘토
05	김태윤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3	멘토
06	나윤성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멘토
07	변준섭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2	멘토
08	손태욱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멘토
09	송시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3	멘토
10	안재효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2	멘토
11	윤소영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2	멘토
12	이예원	자유전공학부 라온반 (공과대학 학생회원권 소지자)	21	멘토
13	이의찬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멘토
14	이준서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9	멘토
15	임승규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8	멘토
16	장주영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2	멘토
17	정민혁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멘토
18	차찬미	공과대학 광역반	23	멘토
19	최준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3	멘토
20	추민성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멘토

21	한서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3	멘토
22	김규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3	스태프
23	김지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18	스태프
24	박선호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스태프
25	유지호	공과대학 광역반	23	스태프
26	정진혁	공과대학 광역반	23	스태프

3. 활동 내용

2023 찾아가는 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 멘토링 활동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두 곳의 초등학교(신리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다섯 차례의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들의 주도 하에 과학 실험 키트를 멘티들에게 설명하고 키트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후에 직접 키트를 제작,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에서 사용한 키트의 경우 전년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비교적 조립 과정이 충실하고 키트를 이용한 응용 활동이 가능한 4가지 키트(오토마타 뚜껍이 로봇, 플라잉 볼, 3D 홀로그램 씨어터-저학년용, 스마트 휴지통-고학년용)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멘토링 준비 - 멘토단 팀별 회의

공학봉사단 활동의 핵심인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멘토단은 봉사 기간 한 달 전부터 팀별 회의를 통해 키트를 미리 제작해보고 키트 제작 시 유의사항, 키트를 이용해 진행할 후속 활동 등을 논의하고 준비하였습니다.

[3] 멘토링 준비 - 스태프 회의

멘토들이 멘토링 활동의 직접적인 사항들을 준비하는 동안, 스태프들은 멘토링 활동에서 보조할 수 있는 키트 책자, 단체복, 현수막 등을 제작하였고 타임라인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4] 멘토단 워크샵

멘토들의 단합력 증진 및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더 지니어스' 프로그램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과일과 채소> 게임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5] 군내 문화체험 활동

마지막 멘토링이 진행된 4일차 오전 이후, 군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조별로 추억을 쌓는 소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Ⅲ. 인준안건

1.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활동 계획

※ 예산 재원: *의 경우 근로장학금 사용, **의 경우 행정실 지원금 사용.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학생회비(00통장) 사용.

사업명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 공과대학 학장단 간담회
취지 및 목표	학장단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제에 대한 교섭, 공과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급의 간담회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10월 중
세부 계획	~ 간담회 이전: 간담회 의제에 대한 조사 및 준비 간담회 이후: 교섭 내용 정리 및 후속 조치, 필요시 교섭 내용 배포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공과대학 내 식당 문제 개선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의 고질적 문제인 식사 공간 및 선택지 부족 문제의 개선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상시
세부 계획	(상시) 기존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 수합 ※ 학생회장단-학장단 간담회에서 2024년부터의 301동 식당 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이공계 R&D 예산 삭감 대응
취지 및 목표	정부의 이공계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대응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8~11월
세부 계획	8월: KAIST 발의 성명문에 연대 단위로 참여 9월: 학내 의견 청취, 총학생회 특별위원회 참여 10월: 교수 등 의견 청취(진행 중) * 추후 공과대학 학생회 차원의 대응은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 예정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공과대학 학생회 홈페이지 제작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학생회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8~10월
세부 계획	8~9월: 홈페이지 초안 제작 10월: 학생회 내에서 피드백 수합 및 배포
예산 항목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결제: 1,000,000₩*

사업명	흡연 구역 정비
취지 및 목표	현재 무실화된 흡연 구역을 정비하고 학우분들께 알림으로써 흡연자, 비흡연자의 편의 개선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9~11월
세부 계획	9월: 집행위원회 1기 및 이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실과 의견 교류, 추후 방향성 논의 10월: 학내 흡연 구역 전수조사 11월: 흡연 구역 정보 배포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서울대학교 군 원격 강좌 개선
취지 및 목표	서울대학교의 군 원격 강좌가 확대 및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8~11월
세부 계획	8~9월: 학내 군 원격 강좌 관련 정보/자료 조사 10월: 유관 기관과의 면담 및 논의 진행 11월: 미정(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월간 문화 11월
취지 및 목표	학업으로 인해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소소한 월별 문화 행사 진행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10~11월
세부 계획	~11월: 행사 컨셉 및 일시 확정 11월: 행사 준비 및 진행
예산 항목	행사 물품 구매: 300,000₩

사업명	월간 진로 11월: 멘토링 데이 II
취지 및 목표	<월간 진로 5월>의 열기에 힘입어 한번에 많은 학우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 그룹별 멘토링 진행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10~11월
세부 계획	10월: 연사 명단 및 일시 확정, 장소 예약 11월 초반: 행사 홍보 및 행사 신청 11월 중후반: 행사 준비 및 진행
예산 항목	연사 섭외 및 준비 비용: 10,000,000₩**

사업명	2023 공과대학 가을축제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학우들에게 학교 생활에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 운영 및 동아리 공연 진행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8~9월
세부 계획	8월 초: 집행위원회 3기 내에서 축제 준비 업무 분배 8월 말: 행사 초기 기획 및 부스 설립, 공연 준비 9월 초: 행사의 세부적인 준비 9월 20일: 본 행사 진행(붉은 광장 & 버들골)
예산 항목	기획사 대금(무대 장비 등): 16,000,000₩ (기) 미니게임 부스 대여 금액: 1,400,000₩ 기획사 대금(무대 장비 등): 44,000,000₩** (기) 부스 준비물 구매 등 : 5,000,000₩* (기)

사업명	배리어 프리
취지 및 목표	학내 거동이 불편한 학우분들의 이동,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배리어 프리 사업 진행
담당 부서	학생회장단
시기	6~11월
세부 계획	6월: 배리어 프리 시설조사 진행(집행위원회 2기 R팀) 7~8월: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 및 협의 9~10월: 학내 배리어 프리 시설 직접 조사 ※ 가을 축제 진행 시 배리어 프리 존 마련 11월: 조사 내용 배포 등의 후속 조치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공과대학 내 휴게실 개선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학우분들의 휴게 환경 향상을 위한 공용 휴게실 개선 (타겟: 301동 수면실, 36동 4층 여학생 휴게실 등)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D팀
시기	9~11월
세부 계획	9월: 휴게실 관련 자료 조사 및 개선 방안 논의 10월: 휴게실 개선 예고 공지(여학생 휴게실) 및 필요 비품 구매 11월: 개선 내용 공지
예산 항목	휴게실 비품 구매 등: 1,000,000₩*

사업명	빌려드림: 공과대학 학생회 물품 대여 서비스
취지 및 목표	학우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대여 서비스 마련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D팀
시기	9~11월
세부 계획	9월: 필요 물품 브레인스토밍 10~11월: 물품 대여 서비스 마련 및 이용 방법 공지
예산 항목	필요 물품 구입: 200,000₩ (기) + 200,000₩*

사업명	창업 백서
취지 및 목표	학내 창업에 관심 있거나 준비 중인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백서 작성 및 배포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R팀
시기	6~10월
세부 계획	6~7월: 팀 내 자료수합 및 브레인스토밍 8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인터뷰 및 학내 전문 기관 방문 면담 9월: 조사 내용 수합 및 백서 초안 작성 10월: 백서 제작 및 배포
예산 항목	창업자 인터뷰: 100,000₩* (기)

사업명	월간 진로 9월: 선배님들의 창업 이야기
취지 및 목표	학우들의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해 매월 진로 행사 진행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E팀
시기	8~9월
세부 계획	8월: 행사 준비 및 연사 섭외 9월 초: 참가자 신청 및 행사의 세부적인 준비 9월 말: 행사 진행 및 피드백
예산 항목	연사 섭외 비용: 300,000₩* (기) 참여자 다과 구매: 9,600₩* (기)

사업명	2023 공과대학 전공로드맵 배포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내 주전공생/다전공생의 학업 보조 차원에서 학부/과에서 공식으로 승인한 전공로드맵 배포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A팀
시기	8~10월
세부 계획	8~9월: 로드맵 관련 자료 조사, 각 학부/과 행정실 컨택 10월: 전공로드맵 제작 및 배포
예산 항목	없음

사업명	월간 진로 10월: 변리사 강연(가제)
취지 및 목표	학우들의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해 매월 진로 행사 진행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A팀
시기	10~11월
세부 계획	10월 초: 행사 준비 및 연사 섭외 10월 말: 참가자 신청 및 행사의 세부적인 준비 11월 초: 행사 진행 및 피드백 ※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10월이 아닌 11월 초에 진행
예산 항목	연사 섭외 비용: 600,000₩* 참여자 다과 구매: 50,000₩*

사업명	월간 문화 10월
취지 및 목표	학업으로 인해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소소한 월별 문화 행사 진행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M팀
시기	9~10월
세부 계획	~10월: 행사 컨셉 및 일시 확정 10월: 행사 준비 및 진행
예산 항목	행사 물품 구매: 300,000₩

사업명	계절학기 공학수학 개선 및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개설
취지 및 목표	공과대학 내 수요가 다수 존재하였던 계절학기 공학수학의 개선 및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강좌 개설
담당 부서	집행위원회 3기 M팀
시기	8~11월
세부 계획	8월: 유관 기관 면담 진행 9월: 학내 인식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10월: 학생회장단 - 학장단 간담회에서 해당 의제 논의 11월: 개선사항 안내 및 추후 대응 논의
예산 항목	설문 조사 상품: 100,000₩* (기)

IV.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도입의 건
2.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의 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도입의 건

1. 도입 취지

지난 제2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2022.12.16.)에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등을 통한 회칙개정 전까지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체계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임시시행세칙」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임시시행세칙의 학생회칙과의 호환성, 세칙 조항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향후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식으로 시행세칙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시시행세칙과 비교하여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통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등 학생회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일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올바르게 않게 사용된 맞춤법이나 잘못된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문의 맞춤법과 표기에 대한 수정은 법제처에서 출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을 참고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도입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삭제	
	추가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3장제2절의 <u>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u> (이하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p> <p>제2조 【원칙】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인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u>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u>(이하 “<u>공운위원</u>”),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u> 등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제3조 【정의】</p> <p>① 본 세칙에서 “<u>회의</u>”라 함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사활동을 말한다.</p> <p>② 본 세칙에서 “<u>공운위원</u>”이라 함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p> <p>③ 본 세칙에서 “<u>의결</u>”이라 함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본 세칙에 따라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p>	<p>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3장제2절의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p> <p>제2조 【원칙】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인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u>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u> 등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제3조 【정의】</p> <p>① 본 세칙에서 “<u>회의</u>”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사활동을 말한다.</p> <p>② 본 세칙에서 “<u>운영위원</u>”이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p> <p>③ 본 세칙에서 “<u>의결</u>”이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본 세칙에 따라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공과대학 학생회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수정. • (제2조) 공과대학 학생회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공과대학 운영위원”으로 수정, 해당 조항이 운영위원회의 협조 대상을 명시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은 “학부/과/전공/반 학생회”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이하 조항에서 해당 내용 생략). • (제3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함은”은 한글의 일본식 표현으로 올바른 표현인 “~(이)란”으로 수정.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4조 【회의 공개의 원칙】</p> <p>① 회의 진행, 회의 결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적 <u>공운위원</u> 과 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본회 회원은 회의의 참관권을 가진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참관인수</u>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5조 【정족수의 원칙】 회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5조가 규정하는 <u>재적 공운위원의 과반수 출석</u>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u>출석 공운위원 과반수 찬성</u>을 의결정족수로 한다.</p> <p>제7조 【토론 자유의 원칙】</p> <p>① 본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u>공운위원</u>에게 토론의 우선권이 부여된다.</p> <p>②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며, 의장은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4조 【회의 공개의 원칙】</p> <p>① 회의 진행, 회의 결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적 <u>운영위원</u> 과 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본회 회원은 회의의 참관권을 가진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참관인수</u>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5조 【정족수의 원칙】 회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u>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u>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u>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u>를 의결정족수로 한다.</p> <p>제7조 【토론 자유의 원칙】</p> <p>① 본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u>운영위원</u>에게 토론의 우선권이 부여된다.</p> <p>②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며, 의장은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띄어쓰기 수정(“참관인수” → “참관인 수”). • (제5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어색한 표현 수정(“제25조가” → “제25조에서”). 정족수는 숫자(數)를 의미하므로 출석이나 참석한 상황이 아닌 그 숫자를 의미하도록 수정. • (제7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8조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u>가결함</u>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1조 【의결권】 <u>공운위원</u>의 의결권은 평등하다.</p> <p>제12조 【의장】</p> <p>① 회의의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부재할 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한다. 공과대학 부학생회장도 부재할 시, <u>공운위원</u> 중 호선한다.</p> <p>②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p> <p>③ 의장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p> <p>④ 의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1인 이상의 <u>공운위원</u>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 진행 방식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p>	<p>제8조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u>가결하는 것을</u> 원칙으로 한다.</p> <p>제11조 【의결권】 <u>운영위원</u>의 의결권은 평등하다.</p> <p>제12조 【의장】</p> <p>① 회의의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부재할 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한다. 공과대학 부학생회장도 부재할 시, <u>운영위원</u> 중 <u>에서</u> 호선한다.</p> <p>②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p> <p>③ 의장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p> <p>④ 의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1인 이상의 <u>운영위원</u>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 진행 방식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 “~함”은 한글의 일본식 표현으로 올바른 표현인 “~하는 것”으로 수정. • (제11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 (제12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조사(“~에서”) 추가.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14조 【소집】 ① 의장은 회의 개최 이전에 안전의 제목과 내용을 <u>공운위원회</u>에게 공고해야 한다. ② <u>임시 회의</u>가 소집된 경우 의장은 회의의 장소와 일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p> <p>제15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회의 장소에 재적 <u>공운위원</u>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p> <p>제19조 【안전】 ① 안전이란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전의 하나로 본다. ③ 안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안전의 종류 2. 본 세칙 제22조 발의 요건 3. 논의안전의 경우 안전의 정확한 요청 사항 및 안전이 가결될 시 필요한 집행의 내용</p>	<p>제14조 【소집】 ① 의장은 회의 개최 이전에 안전의 제목과 내용을 <u>운영위원회</u>에게 공고해야 한다. ② <u>임시회의</u>가 소집된 경우 의장은 회의의 장소와 일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p> <p>제15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회의 장소에 재적 <u>운영위원</u>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p> <p>제19조 【안전】 ① 안전이란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전의 하나로 본다. ③ 안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본 세칙 제20조에서 <u>규정하는</u> 안전의 종류 2. 본 세칙 제22조에서 <u>규정하는</u> 발의 요건 3. 논의안전의 경우 안전의 정확한 요청 사항 및 안전이 가결될 시 필요한 집행의 내용</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 (제15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 (제19조) 조문의 내용이 인용되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20조 【안전의 종류】</p> <p>① 안전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전으로 구분된다.</p> <p>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안전으로 논의안건이 이에 해당된다. 논의안건은 토론을 통해 안전 내용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하다.</p> <p>③ 의안이 아닌 안전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안전이다. <u>공운위원회</u>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의안이 아닌 안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심의안전: <u>공운위원</u> 간의 타협과 절충이 불가하여 가부만 결정하는 안전으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안전을 제출한 기구에 심의 결과와 시정 사항을 제출 기구에 전달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u>공학대회</u>에서 부결된 예/결산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2. 인준안전: <u>공운위원</u> 간의 타협과 절충, 제출 기구의 부분적인 시정이 불가하여 가부만 결정하는 안전이다.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u> 인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3. 검토안전: 회원 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안전으로 <u>공학대회</u>에 상정할 집행기구의 예/결산안,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략)</p>	<p>제20조 【안전의 종류】</p> <p>① 안전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전으로 구분된다.</p> <p>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안전으로 논의안건이 이에 해당된다. 논의안건은 토론을 통해 안전 내용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하다.</p> <p>③ 의안이 아닌 안전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안전이다. <u>운영위원회</u>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의안이 아닌 안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심의안전: <u>운영위원</u> 간의 타협과 절충이 불가하여 가부만 결정하는 안전으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안전을 제출한 기구에 심의 결과와 시정 사항을 제출 기구에 전달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서 부결된 예/결산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2. 인준안전: <u>운영위원</u> 간의 타협과 절충, 제출 기구의 부분적인 시정이 불가하여 가부만 결정하는 안전이다. <u>공과대학 집행위원</u> 인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3. 검토안전: 회원 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안전으로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 상정할 집행기구의 예/결산안,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략)</p>
<p><개정 취지></p> <p>• (제20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공과대학 학생회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와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으로 수정(이하 조항에서 해당 내용 생략).</p>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22조 【안전제출·안전상정·안전심의】</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과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u>는 의안을 개회 이전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u>, 산하기구, 특별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안전, 인준안전, 심의안전, 검토안전, 기타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p> <p>③ 재적 <u>공운위원</u> 5분의1 이상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회 1일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적 <u>공운위원</u>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회 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p> <p>④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다음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이월한다.</p> <p>⑤ <u>공운위원</u>은 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석 <u>공운위원</u>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p> <p>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p> <p>(중략)</p>	<p>제22조 【안전의 제출·상정·심의】</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과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의안을 개회 이전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 산하기구, 특별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안전, 인준안전, 심의안전, 검토안전, 기타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p> <p>③ 재적 <u>운영위원</u> 5분의1 이상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회 1일 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적 <u>운영위원</u>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회 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p> <p>④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다음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이월한다.</p> <p>⑤ <u>운영위원</u>은 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석 <u>운영위원</u>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p> <p>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p> <p>(중략)</p>
<p><개정 취지></p> <p>• (제22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제20조 참고).</p>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24조 【발언권】</p> <p>① <u>공운위원</u>과 <u>참관인</u>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단, <u>공운위원</u>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부여된다.</p> <p>② <u>공운위원</u>은 소속 단위를, <u>참관인</u>은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종류와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7조 【표결】</p> <p>①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p> <p>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u>함에 있어서</u>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p> <p>제28조 【표결 방법】</p> <p>① 표결은 기명으로 <u>함</u>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의장은 재석 <u>공운위원</u>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p> <p>③ 표결에는 회의 장소에 재석한 <u>공운위원</u>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 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p> <p>(중략)</p>	<p>제24조 【발언권】</p> <p>① <u>운영위원</u>과 <u>참관인</u>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단, <u>운영위원</u>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부여된다.</p> <p>② <u>운영위원</u>은 소속 단위를, <u>참관인</u>은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종류와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7조 【표결】</p> <p>①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p> <p>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u>할 때</u>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p> <p>제28조 【표결 방법】</p> <p>① 표결은 기명으로 <u>하는 것</u>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의장은 재석 <u>운영위원</u>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p> <p>③ 표결에는 회의 장소에 재석한 <u>운영위원</u>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 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p> <p>(중략)</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 (제27조) “~함에”는 한글의 일본식 표현으로 올바른 표현인 “~할 때”로 수정. • (제28조) “~함”은 한글의 일본식 표현으로 올바른 표현인 “~하는 것”으로 수정.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30조 【회의록】</p> <p>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장소 2. 개회·휴게·유회·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u>공운위원</u> 명단 4. <u>공운위원</u>의 출입 사항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u>공운위원</u>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u>표결결과</u>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u> 및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u>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체는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p> <p>③ 회의의 의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여 취급한다.</p> <p>제31조 【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2일 이내에 본 세칙 제30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u>제30조제7호</u>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p>	<p>제30조 【회의록】</p> <p>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장소 2. 개회·휴게·유회·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u>운영위원</u> 명단 4. <u>운영위원</u>의 출입 사항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u>운영위원</u>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u>표결 결과</u>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 및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체는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p> <p>③ 회의의 의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여 취급한다.</p> <p>제31조 【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2일 이내에 본 세칙 제30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u>제30조제1항제7호</u>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제20조 참고). 띄어쓰기 수정. • (제31조) 조항의 항 번호가 누락되어 추가. 	

기존(임시시행세칙)	도입안
<p>제32조 【회의록 불게제】</p> <p>① 회원의 중요한 신상 정보 등으로써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 공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불게제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부분을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존회의록 및 공개회의록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p> <p>② 회원은 공개회의록에 불게제된 내용을 의장의 승인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요청하려는 회원은 의장이 요구할 경우 학생증 혹은 재적증명서 등 본인이 회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확인 이후 즉시 자료를 파기한다. 또한 의장은 회원 여부의 확인 이후 즉시 증빙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2조 【회의록 불게제】</p> <p>① 회원의 중요한 신상 정보 등으로써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불게제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부분을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존회의록 및 공개회의록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p> <p>② 회원은 공개회의록에 불게제된 내용을 의장의 승인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요청하려는 회원은 의장이 요구할 경우 학생증 혹은 재적증명서 등 본인이 회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확인 이후 즉시 자료를 파기한다. 또한 의장은 회원 여부의 확인 이후 즉시 증빙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p>
<p><개정 취지></p> <p>• (제32조) 기구 명칭 통일(제2조 참고).</p>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신설 2023.XX.XX.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3장제2절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원칙】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인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등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3조 【정의】

- ① 본 세칙에서 “회의”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 ② 본 세칙에서 “운영위원”이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 ③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본 세칙에 따라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4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회의 진행, 회의 결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본회 회원은 회의의 참관권을 가진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관인 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정족수의 원칙】 회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6조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7조 【토론 자유의 원칙】

- ① 본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②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며, 의장은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3장 회의의 구성

제10조 【구성】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5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11조 【의결권】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제12조 【의장】

① 회의의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부재할 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한다. 공과대학 부학생회장도 부재할 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 진행 방식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제13조 【서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서기를 두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속기록을 작성한다.

제14조 【소집】

① 의장은 회의 개최 이전에 안건의 제목과 내용을 운영위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회의가 소집된 경우 의장은 회의의 장소와 일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5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회의 장소에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 【회순】 개의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보고사항
4. 안건심의
5. 폐회선언

제17조 【회의 용어의 정의】 회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리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개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것.

4. 속개: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
5.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제18조 【회의의 폐회·유회·휴개】

- ①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포하며, 폐회가 선포됨과 동시에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4장 안건

제19조 【안건】

- ① 안건이란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 ③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본 세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안건의 종류
 2. 본 세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발의 요건
 3. 논의안건의 경우 안건의 정확한 요청사항 및 안건이 가결될 시 필요한 집행의 내용

제20조 【안건의 종류】

-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안건으로 논의안건이 이에 해당된다. 논의안건은 토론을 통해 안건 내용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하다.
-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안건이다. 운영위원회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의안이 아닌 안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안건: 운영위원 간의 타협과 절충이 불가하여 가부만 결정하는 안건으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제출한 기구에 심의 결과와 시정 사항을 제출 기구에 전달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부결된 예/결산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인준안건: 운영위원 간의 타협과 절충, 제출 기구의 부분적인 시정이 불가하여 가부만 결정하는 안건이다. 공과대학 집행위원 인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검토안건: 회원 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안건으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집행기구의 예/결산안,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검토 결과와 시정사항을 제출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의결이 불필요한 안건으로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4. 기타안건: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으로 회원 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안건이다. 의결이 불필요한 안건으로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제21조 【의안의 종류】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과 수정안, 이견안으로 구분된다.

1. 원안: 제22조에 따라 발의된 의안.
2. 수정안: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이다.
3. 이견안: 동일 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제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의안이다.

제22조 【안건의 제출·상정·심의】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과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의안을 개회 이전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재적 운영위원 5분의1 이상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회 1일 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회 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
- ④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다음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이월한다.
- ⑤ 운영위원은 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 ⑥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반드시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 ⑦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발제 및 질의응답,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계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 각각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 찬반토론을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 ⑧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⑨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에 부친다.
- ⑩ 발의된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다시 발의된다.

제23조 【안건의 처리 과정】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또는 의사 표명
5.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제5장 발언

제24조 【발언권】

- ① 운영위원과 참관인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 ② 운영위원은 소속 단위를, 참관인은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종류와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발언 횟수와 시간】

- ① 의장은 균등한 발언을 위해 회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를 표결에 부친다.
- ②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부여한다.

1. 신상발언: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2. 규칙발언: 회의 진행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3. 의사진행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4. 질문발언: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5. 질의발언: 제출된 안건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6. 찬반발언: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제6장 표결

제27조 【표결】

- ①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할 때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제28조 【표결 방법】

-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재석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③ 표결에는 회의 장소에 재석한 운영위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 인원엔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④ 2개 이상의 수정안이나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 발의된 순서의 역순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을 물어 계산할 수 있다.

제2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7장 회의록

제30조 【회의록】

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휴게·유회·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운영위원 명단
4. 운영위원의 출입 사항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운영위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 결과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및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체는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1조 【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2일 이내에 본 세칙 제30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0조제1항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록 불게재】

① 회원의 중요한 신상 정보 등으로써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불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부분을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존회의록 및 공개회의록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

② 회원은 공개회의록에 불게재된 내용을 의장의 승인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요청하려는 회원은 의장이 요구할 경우 학생증 혹은 재적증명서 등 본인이 회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확인 이후 즉시 자료를 파기한다. 또한 의장은 회원 여부의 확인 이후 즉시 증빙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8장 세칙개정

제33조 【세칙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세칙은 공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안은 각각의 개정 취지 및 목적을 가진 3개의 세부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각 세부 개정안은 이전의 세부 개정안이 가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각 세부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이전의 조항에 덮여 씌워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3개의 ‘세부 개정안’은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만 분류한 것이고 본 안의 표결은 각 세부 개정안이 합쳐진 하나의 안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개정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안을 별개의 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기에 채택된 방법으로 제43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10/3)의 검토를 반영한 것입니다.

(1)

세칙 도입·부칙 폐지 관련 개정안

1. 개정 취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의 정식 도입에 따라 제29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반 학생회 설립에 따라 부칙(2022.10.07.)의 제6조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해당 부칙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삭제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29조의2 (회의 운영 시행세칙)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XX.>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2.10.07.)</p> <p>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2.10.07.></p> <p>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p> <p>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2.10.07.)</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 2023.10.XX.></u></p>

1. 개정 취지

• 조문 간 중복되는 내용이나 세부적인 표현 수정, 조문 이동이 필요한 조항 등 회칙의 정합성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올바르지 않게 사용된 맞춤법이나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조문의 맞춤법과 표기에 대한 수정은 법제처에서 출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을 참고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삭제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p>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 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p> <p>(중략)</p> <p>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p>	<p>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이때</u>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 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23.10.XX.]</p> <p>(중략)</p> <p>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문구수정 2023.10.XX.]</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단~”이 두 문장 연속으로 반복되는데, 첫 문장의 경우 정족수에 대한 예외 경우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문장과 비교하였을 때 총회가 열리는 상황의 설명이므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첫 문장의 앞부분을 “이때~”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14조) ‘운영위원’은 개인을, ‘운영위원회’는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단체의 특정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단체인 ‘운영위원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 용어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18조 (소집) 공학대회는 <u>정기 회의</u>와 <u>임시 회의</u>를 둔다.</p> <p>① <u>정기 회의</u>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u>임시 회의</u>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 수정 2018.04.03.]</p> <p>③ 의장은 대회 10일 이전에 공고한다.</p> <p>제18조의2 (공고) <신설 2018.04.03.></p> <p>①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소집 경위 및 과정,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 (소집) 공학대회는 <u>정기회의</u>와 <u>임시회의</u>를 둔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① <u>정기회의</u>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u>임시회의</u>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 수정 2018.04.03.]</p> <p>③ <삭제 2023.10.XX.></p> <p>제18조의2 (공고) <신설 2018.04.03.></p> <p>①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소집 경위 및 과정,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취지></p> <p>• (제18조) 제18조 제3항에서 명시하는 ‘대회’의 사전적 의미는 “큰 집회나 회의”로, “회의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회’와 사실상 낱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18조 제3항의 내용과 제18조의2 제1항의 내용이 중복되고, 제18조는 소집 / 제18조의2는 공고에 초점이 맞춰진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의 조항(제18조 제3항)은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p> <p>또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의 띄어쓰기 표현을 총학생회칙과 마찬가지로 각각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통일하였습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으로 명하고,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 중 참석자가 1인 이상일 <u>경</u>우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 ③ <u>임시 회의</u>는 의장 또는 운영 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u>집행위원</u>, 제 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p>	<p>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참석자가 1인 이상일 <u>때</u>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10.XX.]</p> <p>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 ③ <u>임시회의</u>는 의장 또는 운영 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p>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 및 <u>집행위원</u>,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 해당 표현을 삭제하여도 조항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기에 제25조에서만 사용된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이라는 복잡한 표현은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28조) 제18조 개정 취지와 동일(띄어쓰기 표기 통일). • (제37조) 집행위원회가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모두를 수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46조 (선거방법)</p> <p>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p> <p>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9.></p> <p>(중략)</p> <p>제48조 (선거시행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문구수정 2023.07.12.]</p> <p>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p> <p>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p> <p>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p> <p>④ <삭제 2017.09.29.></p> <p>⑤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썸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 \times \frac{2000 + 250}{3500 + 250}$) <개정 2014.10.29.> [문구수정 2016.06.27.]</p>	<p>제46조 (선거방법)</p> <p>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p> <p>②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조문이동 2023.10.XX.></p> <p>③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조문이동 2023.10.XX.></p> <p>④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 <조문이동 2023.10.XX.></p> <p>⑤ <삭제 2017.09.29.> <조문이동 2023.10.XX.></p> <p>⑥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썸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 \times \frac{(2000 + 250)}{(3500 + 250)}$(%)) <개정 2014.10.29.> [문구수정 2016.06.27.] <조문이동 2023.10.XX.></p> <p>⑦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조문이동 2023.10.XX.></p>

개정 전	개정 후
<p>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p> <p>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9.29.></p> <p>⑧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2017.09.29.></p> <p>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p>	<p>⑧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조문이동 2023.10.XX.></p> <p>제48조 (선거시행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문구수정 2023.07.12.]</p> <p>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기구,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신설 2023.10.XX.></p> <p>②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2017.09.29.></p> <p>③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p>
<p><개정 취지></p> <p>• (제46조·48조) 제4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은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선거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항들은 총학생회칙에서 제56조 (선거시행세칙)이 아닌 제54조 (선거방법)에 나열되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제4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제46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조문이동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정 전 제46조 제2항은 필요성이 사라지기에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p> <p>제48조 (선거시행세칙)에서는 기존에 제8항, 제9항으로 존재했던 세칙의 의결, 학생회칙과의 위계와 별도로 선거시행세칙의 전반적인 소개 조항(개정 후 제48조 제1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총학생회칙 제56조 (선거시행세칙) 제1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52조 (예산)</p> <p>① 매 회기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학대회에서 <u>심</u>의 의결한다. <개정 2018.04.03.></p> <p>② 공학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u>예산안이 의결 받지 못한</u>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p> <p>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회칙 개정</p> <p>제55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p> <p>① 공학 대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p> <p>② 운영위원회의 발의</p> <p>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p>	<p>제52조 (예산)</p> <p>① 매 회기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학대회에서 <u>심</u>의 의결한다. <개정 2018.04.03.> [문구 수정 2023.10.XX.]</p> <p>② 공학대회가 개최되지 못해 <u>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u>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회칙개정</p> <p>[문구수정 2023.10.XX.]</p> <p>제55조 (발의) <u>회칙개정안</u>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① 공학 대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p> <p>② 운영위원회의 발의</p> <p>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2조) 제1항의 경우 가운뎃점(·)이 누락되어 추가하였고, 제2항의 경우 ‘예산안’은 피동 표현으로 사용되기 부적합한 용어로 이를 의결하거나 의결하지 못한 명확한 주체(공학대회,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기에 능동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55조) ‘회칙개정’의 경우, 다수의 법령 및 회칙에서 채택하고 있는 띄어쓰기로 수정하였으며 제55조 본문에서 발의되는 대상은 ‘회칙개정’이 아닌 개정안 자체이므로 이에 맞게 ‘회칙개정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 (중략)</p> <p>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중략)</p> <p>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u>구성</u> <u>여부</u>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70조 (보고 및 감사) (중략)</p> <p>②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 (중략)</p> <p>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중략)</p> <p>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의 <u>구성</u> <u>여부</u>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u>문구수정 2023.10.XX.</u>]</p> <p>제70조 (보고 및 감사) (중략)</p> <p>②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 <u>정기회의</u>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u><개정 2023.10.XX.></u></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9조)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읽힐 수 있도록 조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 (제70조) 학생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아닌 단체이므로 회의라는 표현을 추가하고자 하였고, 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기회의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3)

기구별 용어 통일 관련 개정안

1. 개정 취지

띄어쓰기, 축약 표현 등 기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표기를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일한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회칙상 표현	통일 후 표현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 학생총회, 총회	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학대회, 공학 대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회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집행위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공과대학 산하기구, 산하기구	공과대학 산하기구
공과대학 특별기구, 특별기구	공과대학 특별기구
동아리, 공과대학 동아리	공과대학 동아리

- 기구별로 사용되었던 모든 축약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회칙 전체가 아닌,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조항에서 명시하는 기구가 정확히 어떤 기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통일 표현은 “공과대학 + (세부 기구명)”의 표기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띄어쓰기가 굳혀져 사용되고 있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 개정년월 표기가 방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일 표현과 가장 혼동되어 사용되었던 기구별 표현(표에서 굵게+밑줄 표시된 명칭)은 일괄적으로 문구수정 일자를 1회 작성하였고, 그 외의 표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문구수정 일자를 작성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하단에 설명을 덧붙여 작성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개정 이전 조항 (제목)	개정 이후 조항 (제목)
삭제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의2 (회원권의 예외적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u>운영위원회의</u>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p> <p>제4조 (회원의 권리)</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09.22.></p> <p>1. <u>운영위원</u></p>	<p>제3조의2 (회원권의 예외적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u>이하 ‘운영위원회’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문구수정 2023.10.XX.</u>]</p> <p>제4조 (회원의 권리)</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09.22.></p> <p>1.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u> [<u>문구수정 2023.10.XX.</u>]</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제6항) ‘운영위원’의 명시 대상을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소속의 운영위원을 의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u>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u>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p> <p>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u>특별기구</u>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개정 2022.10.07.></p> <p>제6조 (기구) 본회는 <u>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산하기구</u>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3.07.12.></p>	<p>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u>공과대학 산하기구 및 당해 공과대학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u>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p> <p>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u>공과대학 특별기구</u>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개정 2022.10.07.></p> <p>제6조 (기구) 본회는 <u>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산하기구, 공과대학 특별기구, 학부/과/전공/반 학생회</u>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3.07.12.> [문구수정 2023.10.XX.]</p>
<p><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학생회 구성에서 누락된 공과대학 학생회장단과 공과대학 특별기구를 추가하였고, 기구의 위계(의결기구: 총회>공학대회>운영위원회, 집행기구: 학생회장단>집행위원회>산하기구·특별기구)와 종류(의결기구>집행기구>자치기구)를 고려하여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p> <p>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u>산하기구</u>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u>특별기구</u>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p> <p>② <u>특별기구</u>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u>운영위원회</u>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p> <p>제8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p> <p>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p> <p>4. 기타 <u>본회의 운영위원회</u>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2장 공과대학 학생 총회</p> <p>제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p>	<p>제7조 (공과대학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이하 ‘산하기구’를 ‘공과대학 산하기구’로, ‘특별기구’를 ‘공과대학 특별기구’로 문구수정 2023.10.XX.]</p> <p>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u>공과대학 산하기구</u>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u>공과대학 특별기구</u>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p> <p>② <u>공과대학 특별기구</u>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p> <p>제8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p> <p>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p> <p>4. 기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2장 공과대학 학생총회</p> <p>[이하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공과대학 학생총회’로 문구수정 2023.10.XX.]</p> <p>제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10조 (의장)</p> <p>① 의장은 <u>공과대학 학생 총회</u>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u>공과대학 학생 총회</u>를 대표한다.</p> <p>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u>운영위원회</u>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p> <p>제11조 (소집)</p> <p>① <u>공과대학 학생 총회</u>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p> <p>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u>운영위원회</u>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p> <p>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한다.</p> <p>제12조 (역할) <u>공과대학 학생 총회</u>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p>	<p>제10조 (의장)</p> <p>① 의장은 <u>공과대학 학생총회</u>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u>공과대학 학생 총회</u>를 대표한다.</p> <p>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p> <p>제11조 (소집)</p> <p>① <u>공과대학 학생총회</u>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p> <p>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p> <p>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한다.</p> <p>제12조 (역할) <u>공과대학 학생총회</u>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단, <u>총회</u>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p> <p>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u>운영위원회</u>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장에 따른다. 단, <u>운영위원회</u>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와 <u>운영위원회</u> [문구수정 2018.04.03.]</p>	<p>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단, <u>공과대학 학생총회</u>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23.10.XX.]</p> <p>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장에 따른다. 단,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및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비고></p> <p>• (제3장) 개정 후 제4장 제목(“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1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문구수정 2018.04.03.]</p> <p>제15조 (지위)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공학대회’라 한다.)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p> <p>제16조 (구성)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구할 시 <u>운영위원회</u>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중략)</p> <p>③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u>운영위원회</u>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2018.04.03.></p>	<p>제1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문구수정 2018.04.03.] [이하 ‘공학대회’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로 문구수정 2023.10.XX.]</p> <p>제15조 (지위)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p>제16조 (구성)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4. 공과대학 정식 등록 동아리가 요구할 시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결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문구수정 2023.10.XX.] (중략)</p> <p>③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2018.04.03.></p>
<p><비고></p> <p>• (제16조 제1항 제4호) 현행 회칙에서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는 “공과대학 정식 등록 동아리”의 정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로 대체하였습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p> <p>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p> <p>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p> <p>제17조 (의장)</p> <p>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p> <p>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p> <p>제18조 (소집) 공학대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p> <p>② 임시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p> <p>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p> <p>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p> <p>제17조 (의장)</p> <p>① 의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p> <p>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p> <p>제18조 (소집)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②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p>

개정 전	개정 후
<p>제19조 (업무) <개정 2018.04.03.> ① <u>공학대회</u>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u>운영위원회</u>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문구수정 2018.04.03.]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7. 기타 <u>공학대회</u>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u>산하기구</u>의 신설과 폐지 <개정 2018.04.03.> ② <u>공학대회</u>는 <u>운영위원회</u>, <u>집행위원회</u>, <u>산하기구</u>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p> <p>제20조 (요구권) 공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u>운영위원회</u>, <u>집행위원회</u>, <u>산하기구</u>에 대해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개정 2018.04.03.> ② <u>공과대학 학생 총회</u>의 소집 요구</p>	<p>제19조 (업무) <개정 2018.04.03.> ①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문구수정 2018.04.03.]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7. 기타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신설과 폐지 <개정 2018.04.03.> ②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는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 <u>공과대학 산하기구</u>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제20조 (요구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 <u>공과대학 산하기구</u>에 대해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 ② <u>공과대학 학생총회</u>의 소집 요구</p>

개정 전	개정 후
<p>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p> <p>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제23조 (안전상정) <개정 2018.04.03.> 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 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③ 의안이 아닌 안전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p>	<p>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p> <p>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제23조 (안전상정) <개정 2018.04.03.> 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 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③ 의안이 아닌 안전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u>운영위원회</u></p> <p>제2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회칙 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참석자가 1인 이상일 때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10.XX.]</p> <p>제25조의2 (학부/과/전공/반 운영위원 예외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 학생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운영위원 구성을 결정하여 <u>운영위원회</u>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12.></p> <p>제26조 (의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u>운영위원회</u>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p> <p>제24조 (지위)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회칙 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25조 (구성)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참석자가 1인 이상일 때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10.XX.]</p> <p>제25조의2 (학부/과/전공/반 운영위원 예외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 학생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운영위원 구성을 결정하여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12.></p> <p>제26조 (의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개정 전	개정 후
<p>제27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p> <p>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전체 예산 결산을 심의 검토 조정하여 <u>공학대회</u>에 제출한다.</p> <p>③ 과반수의 발의로 <u>공학대회나 공과대학 학생 총회</u>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u>공학대회</u>에 상정한다.</p> <p>⑥ 기타 <u>공학대회</u>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p> <p>⑦ <u>운영위원회</u>는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을 보고 받고 <u>집행위원회</u>와 <u>산하기구</u>,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07.12.]</p> <p>⑧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결한다. <신설 2018.04.03.></p>	<p>제2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p> <p>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전체 예산 결산을 심의 검토 조정하여 <u>공과대학학생대표자 회의</u>에 제출한다.</p> <p>③ 과반수의 발의로 <u>공과대학학생대표자 회의나 공과대학 학생총회</u>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 상정한다.</p> <p>⑥ 기타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p> <p>⑦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는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을 보고받고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와 <u>공과대학 산하기구</u>,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07.12.] [문구수정 2023.10.XX.]</p> <p>⑧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결한다. <신설 2018.04.03.></p>
<p>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p> <p>① <u>운영위원회</u>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p>	<p>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p> <p>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p>
<p>제29조 (의결) <u>운영위원회</u>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9조 (의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공과대학 학생회장</u>, <u>공과대학 부학생회장</u> 및 <u>집행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p> <p>제31조 (공과대학 학생회장)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u>운영위원회의</u> 의장이 되며 공과대학 학생 총회 및 공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u>공학대회</u>에서 행한다. (중략)</p> <p>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u>집행위원회</u>의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 ② <u>운영위원회</u>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문구수정 2018.04.03.] ③ <u>공학대회</u>의 의결 사항 중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공과대학 학생회장단</u> 및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 [문구수정 2023.10.XX.]</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문구수정 2023.10.XX.]</p> <p>제31조 (공과대학 학생회장)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및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서 행한다. (중략)</p> <p>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의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 ②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문구수정 2018.04.03.] ③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의 의결 사항 중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p>
<p><비고></p> <p>• (제4장, 제31조) 제목에서 규정하는 기구를 총학생회칙과 동일한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1조의 경우 대표하는 기구의 위계(총회>공학대회>운영위원회)에 맞게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p>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집행위원회</p> <p>제38조 (지위) <u>집행위원회</u>(이하—<u>집행위</u>)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p> <p>제39조 (구성) <개정 2018.04.03.></p> <p>① <u>집행위원회</u>는 <u>집행위원장</u>, <u>집행위원</u>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8.04.03.></p> <p>② <u>집행위원</u>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u>운영위원회</u>가 인준한다. <신설 2018.04.03.></p> <p>③ <u>집행위원장</u>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u>운영위원회</u>가 인준한다. 필요에 따라 <u>운영위원회</u>의 인준을 통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04.03.></p> <p>제40조 (부서 및 업무) <u>집행위원회</u>는 필요에 따라 내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 때 부서의 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u>운영위원회</u>가 인준한다. <개정 2018.04.03.></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이하 '<u>집행위원회</u>'를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로 <u>문구수정 2023.10.XX.</u>]</p> <p>제38조 (지위)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u>문구수정 2023.10.XX.</u>]</p> <p>제39조 (구성) <개정 2018.04.03.></p> <p>①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u>집행위원장</u>, <u>집행위원</u>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8.04.03.></p> <p>② <u>집행위원</u>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가 인준한다. <신설 2018.04.03.></p> <p>③ <u>집행위원장</u>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가 인준한다. 필요에 따라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인준을 통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04.03.></p> <p>제40조 (부서 및 업무)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필요에 따라 내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 때 부서의 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가 인준한다. <개정 2018.04.03.></p>

개정 전	개정 후
<p>제40조의2 (공간 조정) <신설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p> <p>① <u>집행위원회</u>는 본회에 배정된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u>운영위원회</u>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u>운영위원회</u>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u>운영위원회</u>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0.07.></p> <p>② 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u>운영위원회</u>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조정세칙을 따른다.</p>	<p>제40조의2 (공간 조정) <신설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p> <p>①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본회에 배정된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0.07.></p> <p>②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조정세칙을 따른다.</p>
<p>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u>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u> 및 <u>공학대회</u>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p>	<p>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u> 및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문구수정 2023.10.XX.]</p>
<p>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u>운영위원회</u>의 의결로 <u>공학대회</u>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03.30.> <개정 2018.04.03.></p>	<p>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의결로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03.30.> <개정 2018.04.03.></p>

개정 전	개정 후
<p>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u>운영위원회</u>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p>	<p>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p>
<p>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p> <p>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p> <p>② <u>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u>는 <u>운영위원회</u>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반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2.></p> <p>③ 위원장은 <u>선관위</u> 위원 중에 호선한다.</p> <p>④ <u>선관위</u>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 <개정 2019.09.12.></p> <p>⑤ <삭제 2019.09.12.></p> <p>⑥ 각 <u>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선관위</u>의 구성은 각각 그 회칙에 따른다.</p>	<p>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문구수정 2023.10.XX.]</p> <p>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p> <p>② <u>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u>는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반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2.></p> <p>③ 위원장은 <u>선거관리위원</u> 중에 호선한다.</p> <p>④ <u>선거관리위원회</u>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 <개정 2019.09.12.></p> <p>⑤ <삭제 2019.09.12.></p> <p>⑥ 각 <u>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u>의 구성은 각각 그 회칙에 따른다.</p>
<p><비교></p> <p>• (제45조) 전반적인 개정 취지에서 설명하였던 축약 표현 지양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 또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46조 (선거방법)</p> <p>④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선관위</u>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 <조문이동 2023.10.XX.></p> <p>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u>산하기구</u>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u>운영위원회</u>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p> <p>제52조 (예산)</p> <p>① 매 회기 <u>집행위원회</u>에서 편성한 예산을 <u>운영위원회</u>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u>공학대회</u>에 제출하고 이를 <u>공학대회</u>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② <u>공학대회</u>가 개최되지 못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u>운영위원회</u>에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p>제46조 (선거방법)</p> <p>④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선거관리위원회</u>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 <조문이동 2023.10.XX.> [문구수정 2023.10.XX.]</p> <p>제50조 (경비와 관리) <u>공과대학</u>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u>공과대학</u>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u>공과대학 산하기구</u>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p> <p>제52조 (예산)</p> <p>① 매 회기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에서 편성한 예산을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 제출하고 이를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②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가 개최되지 못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개정 전	개정 후
<p>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u>집행위원회</u>에서 일괄 작성하여 <u>공학대회</u>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p>	<p>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에서 일괄 작성하여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p>
<p>제54조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 [문구수정 2016.06.27.]</p> <p>① 모든 지원은 <u>집행위</u>가 심의하고 <u>운영위원회</u>가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6.06.27.]</p> <p>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위는 사업 1주전 사업계획서를 <u>학생회 집행위원회</u>에 제출하고, 사업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내역으로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u>운영위원회</u>에 소명하여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을 집행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p>	<p>제54조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 [문구수정 2016.06.27.]</p> <p>① 모든 지원은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가 심의하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가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23.10.XX.]</p> <p>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위는 사업 1주전 사업계획서를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에 제출하고, 사업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내역으로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소명하여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을 집행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p>
<p>제55조 (발의)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① <u>공학 대회</u>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p> <p>② <u>운영위원회</u>의 발의</p> <p>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p>	<p>제55조 (발의)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①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p> <p>②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발의</p> <p>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p>

개정 전	개정 후
<p>제56조 (의결 공포) 발의 시 <u>공학대회</u>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u>공학대회</u>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p> <p>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의 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u>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u>'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u>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u>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p>	<p>제56조 (의결 공포) 발의 시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p> <p>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3.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의 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u>공과대학 산하기구</u>'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XX.]</p> <p>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23.10.XX.]</p>

개정 전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동아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전면개정 2018.04.03.> <개정 2020.05.11.></p> <p>제65조 (공과대학-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p> <p>① 공과대학-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산하기구</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p> <p>제66조 (구성)</p> <p>① 산하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공과대학 동아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전면개정 2018.04.03.> <개정 2020.05.11.> [문구수정 2023.10.XX.]</p> <p>제65조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문구수정 2023.10.XX.]</p> <p>①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공과대학 산하기구</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p> <p>제66조 (구성)</p> <p>①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66조 (구성)</p> <p>② <u>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u>는 다음 각 호로 하며, <u>산하기구</u>의 등록은 제8장에 따른 회칙 개정을 통해 한다.</p> <p>1. <삭제 2019.09.12.></p> <p>2.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p> <p>③ <u>산하기구</u>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p> <p>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u>산하기구</u>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u>운영위원회</u>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u>산하기구</u>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u>운영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u>산하기구</u>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u>산하기구</u>가 회칙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u>집행위원회</u>는 해당 <u>산하기구</u>를 대상으로 특별 공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05.11.></p>	<p>제66조 (구성)</p> <p>② <u>공과대학 산하기구</u>는 다음 각 호로 하며,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등록은 제8장에 따른 회칙개정을 통해 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p>1. <삭제 2019.09.12.></p> <p>2.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p> <p>③ <u>공과대학 산하기구</u>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p> <p>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u>공과대학 산하기구</u>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u>공과대학 산하기구</u>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u>공과대학 산하기구</u>가 회칙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해당 <u>공과대학 산하기구</u>를 대상으로 특별 공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05.11.></p>

개정 전	개정 후
<p>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p> <p>① <u>운영위원회</u>는 <u>산하기구</u>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p>② <u>공학대회</u>는 <u>산하기구</u>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u>운영위원회</u>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u>산하기구</u>를 재구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학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p>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p> <p>①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는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p>②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u>는 <u>공과대학 산하기구</u>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u>공과대학 산하기구</u>를 재구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또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p>제68조 (지위)</p> <p>① <u>산하기구</u>는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u>운영위원회</u>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p> <p>② 집행위원회에서 <u>운영위원회</u>에 발의하는 의안이 <u>산하기구</u>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u>산하기구</u> 및 <u>집행위원회</u>는 각 이안(異案)을 <u>운영위원회</u>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p>	<p>제68조 (지위)</p> <p>① <u>공과대학 산하기구</u>는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p> <p>②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에서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발의하는 의안이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u>공과대학 산하기구</u> 및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는 각 이안(異案)을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69조 (재정)</p> <p>① 산하기구의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u>집행위원회</u>에서 운영하는 경비에서 지급한다.</p> <p>② 산하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u>운영위원회</u>에 있다.</p> <p>제70조 (보고 및 감사)</p> <p>① 산하기구의 장은 공학대학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p>②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u>운영위원회</u> 정기회의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집행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u>공학대학이나 운영위원회</u> 3일 전까지 각 산하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④ <u>운영위원회</u>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p>	<p>제69조 (재정)</p> <p>①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u>공과대학 집행위원회</u>에서 운영하는 경비에서 지급한다.</p> <p>②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에 있다.</p> <p>제70조 (보고 및 감사)</p> <p>①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은 <u>공과대학학</u> <u>생대표자회의</u>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p>② <u>공과대학</u>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 정기회의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XX.></p> <p>③ 집행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u>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u> 3일 전까지 각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3.10.XX.]</p> <p>④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는 필요한 경우 <u>공과대학 산하기구</u>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u>공과대학 산하기구</u>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71조 (기구운영세칙) 각 산하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기구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기구운영세칙은 <u>운영위원회의</u>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u>운영위원회</u>의 결정에 따른다.</p>	<p>제71조 (기구운영세칙) 각 <u>공과대학 산하기구</u>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기구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기구운영세칙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u>공과대학 운영위원회</u>의 결정에 따른다.</p>

V. 심의 안건

1.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2. 2023년 2기(2023.06.15.~2023.11.30.)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결산(안)

2023년 1기(2022.12.01.~2023.06.14.) 공과대학 학생회 결산(안)

※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00통장을 학생회비 통장으로, 74통장을 특정 사업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부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부록 1,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0통장>

1. 산입 요약

분류	세목	산입 (₩)
이월금	2022 회계 2기 이월금	4,604,429
예금이자	2022 하반기 예금이자	2,309
학생회비	1학기 총학생회비 분납금	2,979,024
산입 총계(A)		7,585,762

2. 지출 요약

분류	세목	지출 (₩)
운영비	Dropbox 연간 구독료	156,008
운영비	공인인증서 갱신 비용	4,400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일괄)	500
지출 총계(B)		160,908
2023 회계 2기 이월금 총계(A-B)		7,424,854

※ ‘2023 새내기 새로배움터’ 관련 회계 내용은 지난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때 심의한 내용으로 본 회의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74통장>

1. 수입 요약

분류	세목	수입 (₩)
이월금	2022 회계 2기 이월금	273,196
예금이자	2022 하반기 예금이자	165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참가비	99,930,000
사업비	공과대학 계산기 공동구매	9,454,000
후원금	밝은눈안과 제휴 후원금	6,000,000
후원금	새터 책자 광고대행사 계약금	3,000,000
수입 총계(A)		118,657,361

2. 지출 요약

분류	세목	지출 (₩)
사업비	2023 새내기 새로배움터	102,342,390
사업비	공과대학 계산기 공동구매	9,454,000
사업비	흡연구역 사전 설문조사	84,600
사업비	월간 문화 3월: 파이데이 행사	475,110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진로탐색 멘토링	643,020
사업비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84,870
사업비	모기 잡아드림	158,630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일괄)	15,500
지출 총계(B)		113,258,120
2023 회계 2기 이월금 총계(A-B)		5,399,241

2023년 2기(2023.06.15.~2023.11.30.)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00통장>

1. 예상 수입

분류	세목	예상 수입(₩)
이월금	2023 회계 1기 이월금(기)	7,424,854
예금이자	2023 상반기 예금이자(기)	2,367
학생회비	2학기 총학생회비 분납금(기)	2,341,186
예산 산입 총계		9,768,407

2. 예상 지출

분류	세목	예상 지출(₩)
사업비	2023 공과대학 가을축제(기)	7,000,000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기)	500
예산 지출 총계		7,000,500

<74통장>

1. 예상 수입

분류	세목	예상 수입(₩)
이월금	2023 회계 1기 이월금(기)	5,399,241
예금이자	2023 상반기 예금이자(기)	5,912
후원금	밝은눈안과 가을축제 후원금(기)	2,000,000
후원금	두잇 가을축제 후원금(기)	3,000,000
예산 산입 총계		10,405,153

2. 예상 지출

분류	세목	예상 지출(₩)
사업비	2023 공과대학 가을축제(기)	10,400,000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기)	1,000
예산 지출 총계		10,401,000

3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결산(안)

※ <2023 찾아가는 공학봉사단>의 회계의 경우 행정실 지원금 및 근로장학금을 예산으로 사용, 학생회비 및 특정 통장 예산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1. 산입 요약

분류	세목	산입 (₩)
	산입 총계	0

2. 지출 요약

분류	세목	지출 (₩)
	지출 총계	0

부 록

1. 2023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2. 2023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3.07.12.)

1

2023년 1기 통장 세부 내역 (00통장)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잔액
0			2022-2기 이월금			₩4,604,429		₩4,604,429
1	2022.12.17.	나세민 학생회장	예금이자	예금이자	06.18.~12.16.	₩2,309		₩4,606,738
2	2023.01.02.	나세민 학생회장	운영비	Dropbox 스토리지	연간 구독료 결제		₩156,008	₩4,450,730
3	2023.01.02.	나세민 학생회장	수수료	Dropbox 스토리지	계좌이체 수수료		₩500	₩4,450,230
4	2023.02.13.	나세민 학생회장	운영비	공동인증서 갱신	공동인증수수료		₩4,400	₩4,445,830
5	2023.04.05.	나세민 학생회장	학생회비	2023-1분기 총학생회비 분담금		₩2,979,024		₩7,424,854

2

2023년 1기 통장 세부 내역 (74통장)

연번	거래일자	담당자	항	목	내용	산입	지출	잔액
0			2022-2기 이월금			₩273,196		₩273,196
1	2022.12.17.	나세민 학생회장	예금이자	예금이자	06.18.~12.16.	₩165		₩273,361
2	2022.12.30.	나세민 학생회장	후원금	안과 후원금	밝은눈안과 제휴	₩6,000,000		₩6,273,361
3-90	새내기 새로배움터 회계(2023 상반기 공학대회 심의로 생략)							₩6,992,221
91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에너지자원공학과	₩597,500		₩7,589,721
92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항공우주공학과	₩318,000		₩7,907,721
93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기계공학부	₩1,107,000		₩9,014,721
94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건축학과	₩693,000		₩9,707,721
95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산업공학과	₩80,000		₩9,787,721
96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전기정보공학부	₩2,136,500		₩11,924,221
97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재료공학부(1/2)	₩1,273,500		₩13,197,721
98	2023.03.05.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재료공학부(2/2)	₩28,500		₩13,226,221
99	2023.03.06.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화학생물공학부	₩1,402,500		₩14,628,721
100	2023.03.06.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조선해양공학과	₩460,500		₩15,089,221
101	2023.03.0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계산기 업체 대금		₩8,981,000	₩6,108,221
102	2023.03.0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계좌이체 수수료		₩500	₩6,107,721
103	2023.03.0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컴퓨터공학부	₩925,500		₩7,033,221
104	2023.03.14.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광역반	₩409,500		₩7,442,721

105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선결제 항목 환급		₩230,180	₩7,212,541
106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계좌이체 수수료		₩500	₩7,212,041
107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상품(계산기) 구매		₩160,000	₩7,052,041
108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계좌이체 수수료		₩500	₩7,051,541
109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이벤트 상품 지급		₩57,890	₩6,993,651
110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계좌이체 수수료		₩500	₩6,993,151
111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이벤트 상품 지급		₩27,040	₩6,966,111
112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파이데이 행사	계좌이체 수수료		₩500	₩6,965,611
113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계산기 업체 대금		₩473,000	₩6,492,611
114	2023.03.18.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계좌이체 수수료		₩500	₩6,492,111
115-117	새내기 새로배움터 회계(2023 상반기 공학대회 심의로 생략)							₩6,713,361
118	2023.03.23.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흡연구역 설문조사	참여자 상품 구매		₩84,600	₩6,628,761
119	2023.03.23.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흡연구역 설문조사	계좌이체 수수료		₩500	₩6,628,261
120	2023.03.24.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계산기 공동구매	원자핵공학과	₩22,000		₩6,650,261
121	2023.03.30.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참여자 간식 구매		₩43,020	₩6,607,241
122	2023.03.30.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계좌이체 수수료		₩500	₩6,606,741
123	2023.03.30.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연사 섭외 비용		₩300,000	₩6,306,741
124	2023.03.30.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계좌이체 수수료		₩500	₩6,306,241
125	2023.03.30.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연사 섭외 비용		₩300,000	₩6,006,241
126	2023.03.30.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월간 진로 3월	계좌이체 수수료		₩500	₩6,005,741
127-128	새내기 새로배움터 회계(2023 상반기 공학대회 심의로 생략)							₩5,645,241
129	2023.04.2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카톡 채널 이벤트	1등 상품 지급		₩27,900	₩5,617,341
130	2023.04.2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카톡 채널 이벤트	계좌이체 수수료		₩500	₩5,616,841

131	2023.04.2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카톡 채널 이벤트	2등 상품 지급		₩28,770	₩5,588,071
132	2023.04.2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카톡 채널 이벤트	계좌이체 수수료		₩500	₩5,587,571
133	2023.04.2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카톡 채널 이벤트	3등 상품 지급		₩28,200	₩5,559,371
134	2023.04.2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카톡 채널 이벤트	계좌이체 수수료		₩500	₩5,558,871
135	2023.05.1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모기 잡아드림	모기 기피제 구입		₩146,860	₩5,412,011
136	2023.05.1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모기 잡아드림	계좌이체 수수료		₩500	₩5,411,511
137	2023.05.1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모기 잡아드림	학생회 로고 스티커		₩11,770	₩5,399,741
138	2023.05.19.	나세민 학생회장	사업비	모기 잡아드림	계좌이체 수수료		₩500	₩5,399,241